

연구윤리 규정

서 문

본 윤리규정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논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즉 저자, 심사위원 및 편수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의 기준과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및 처리방법 등을 검증, 조치 제시하고자 제정되었다.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논문집의 심사와 출판과정에서 공정성과 과학기술연구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저자·심사위원·편집위원 윤리규정

제1조(저자의 윤리규정)

투고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6.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이 깊거나,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논문내용에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9.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논문집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지만, 본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논문집에 논문으로 게재하거나 투고하지 않은 발표물은 본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본 논문집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표물의 출처를 제출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0.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 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12.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13.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5. 논문의 게재가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을 경우, 심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근거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6. 투고 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저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17. (저자의 기준) 논문의 저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개념 혹은 이론 개발, 프로토타입 개발 혹은 실험 및 설계,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기여한 자
 - 논문 작성, 검토 혹은 수정에 기여한 자
 -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게재 승인을 받은 최종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
 - 논문작성 전반에 대한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 이의제기 등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 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자
18. (이해 관계(Conflict-of-Interest)에 대한 정책) 논문의 저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끼리 상호 호혜를 베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 고용 관계, 컨설팅 제공, 주식 소유, 사례금 제공, 전문가의 유료 증언 제공 등은 금전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 저자 간의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해당 분쟁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 공개함으로써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한 연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해 상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이해 상충에 대한 발생 원인 및 배경, 저자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해 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되,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한다.
5.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 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의 연구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는 데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인이나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해당 편집인이나 편집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단원이 있을 경우 편집장은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편집위원들로 5-10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부정행위(정의 · 검증 · 조치)

제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고려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부적절한 집필행위, 혹은 부정행위 관련 조사의 방해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2.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성과를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술지 투고 논문에서 초기 성과가 발표된 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각주, 참고문헌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 ②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③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와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제4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 ② 참고문헌 왜곡

-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5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6조(원문의 재활용)

-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조사 필요성 검토 및 제기)

편집위원회에서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내용이 본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연구 진실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를 이사회에 요청한다.

제10조(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이사회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기한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합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를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일로부터 4주 이내에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등을 포함하여 5~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구성 후 8주 이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제11조(연구윤리조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검증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 ① 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②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조사자가 연구윤리규정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투고된 논문을 반려하고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철회 내용을 발행
 2. 논문 투고의 제한
 3. 회원의 제명
 4. 법률기관에의 고발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등

제18조(위원회 최종보고서)

- ① 위원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해 심의 의결된 내용 및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 ①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사전 예방과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학회 논문집 및 학회지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홍보한다.
 1. 본 규정은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